

Sentencing Commission

양형기준안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 약 어 표 |

- 외감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 443조 제1항, 제2항),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 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외감법 제20조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특경법 제5조 제3항),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특경법 제7 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 거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 허위 재무 제표 작성 · 공시 / 회계정보 위 · 변조	4월 - 10월	8월 - 1년4월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02 ·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 · 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임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요구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 · 약속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 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01 ·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 (1) 제1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2항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외감법 제20조 제2항

02 ·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 제1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6) 제6유형 : 수재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특경법 제5조 제3항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 제1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특경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01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증권범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 범행과 독립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상 기업의 상장폐지를 초래하거나 대상 기업을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손해배상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M&A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범행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규제 또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주식처분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회사 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단,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환수되는 이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아. 비난 동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 적대적 M&A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2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증권범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의 대가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규제 또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 동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상증자 또는 은행대출 목적의 범행
 -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 금융범죄

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를 한 경우
-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적극적 요구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 증재

-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

-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알선행위를 한 경우

- ❑ 수재 후 알선행위 또는 알선수재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기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기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Ⅰ 공통원칙 Ⅰ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Ⅰ 다수범죄 처리기준 Ⅰ

01 · 적용범위

-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와 금융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04 ·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01 ·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지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 ·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지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융기관 임원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재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지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지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서는,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통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02 •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3년 - 5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01 ·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법 제3조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법 제3조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

02 ·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양형인자의 정의

01 ·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피해자의 안전모 또는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확대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02 ·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제1유형)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 2유형)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제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Ⅱ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통원칙 |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지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